

보도시점

2023. 12. 27.(수) 11:00
12. 28.(목) 조간

배포 2023. 12. 27.(수) 09:00

건전한 과수묘목 공급 활성화를 위한 무병화인증제 등 본격 추진

- 종자산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공포·시행(12.28.)
- 사과·배·복숭아·포도·감귤의 묘목을 대상으로 무병화인증제 본격 시행
-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한 종자 생산·판매 이력제 대상을 사과·배로 규정
- 판매 목적이 아닌 자가소비용 과수 종자도 반드시 국립종자원에 수입신고
- 종자관리사는 2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종자산업법이 하위법령에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한 종자산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되어 12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12월 28일 이후부터 달라지는 종자산업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바이러스·바이로이드에 감염되지 않은 무병화(無病化) 묘목임을 인증* 하는 대상을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등 5대 과수 묘목으로 구체화하고, 무병화 인증에 필요한 심사 절차와 표시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

* (인증제 도입 목적) 바이러스나 바이로이드가 과수 묘목에 감염되면 과실의 생산량 감소, 당도 및 품질 저하 등 경쟁력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바이러스 등이 제거되도록 무병화 처리·관리하였음을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인증하여 현재 6.6% 수준의 무병화 묘목 공급률을 확대시켜 나가기 위함

둘째, 과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기 위한 종자의 생산·판매 이력제 대상을 사과와 배로 규정하고, 사과·배 종자를 판매하는 자는 △종자의 생산장소 및 면적 △종자의 생산수량 △판매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을 2024년 6월 28일부터 기록·보관하도록 하였다.

셋째, 과거 수입신고가 면제되었던 판매 외 목적으로 수입하는 자가소비용 등 과수 종자도 품종명칭과 수량 등을 기재한 ‘종자 수입 신고서’를 작성하고 식물검역합격증명서 등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종자원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기타 사항으로 △종자관리사 자격기준에 버섯산업기사 추가 △종자관리사는 국립종자원, 산림청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부터 2년마다 6시간의 정기적인 보수교육 이수 의무화 △노지(露地)에서 육묘가 이뤄지는 양파와 파는 철재 하우스 시설이 필요 없고 난방기도 면제하는 등 시설기준 간소화 등이다.

농식품부 문태섭 첨단기자재종자과장은 “이번 종자산업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농업인은 건전한 과수 묘목을 안심하고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고, 종자 생산·판매이력제 도입으로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 기반도 마련하였다”고 하면서, “고품질 종자생산을 통해 종자산업도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종자산업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 내용

담당 부서	농식품혁신정책관실 첨단기자재종자과	책임자	과 장	문태섭 (044-201-1891)
		담당자	과학기술서관	오동진 (044-201-2479)



1. 종자산업법 시행령 주요 개정 사항

□ 종자관리사의 자격기준 관리 강화

- 종자관리사는 국립종자원·산림청·전문인력양성기관*을 통해 2년마다 6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정기교육 실시(제12조의2 신설)

*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서울대, 경북대, 원광대)

- 종자관리사 취득 자격기준에 버섯산업기사 추가(제12조제3호의2 신설)

* (현재) 종자기술사, 종자기사, 종자산업기사, 버섯종균기능사 → (추가) 버섯산업기사

□ 종자의 무병화인증 대상종자 범위 규정(제12조의3 신설)

-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을 사과·배·포도·복숭아·감귤 묘목과 그 밖에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물로 규정

* 대상작물은 과수산업규모가 크고 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있는 과수 5대 작물로 우선 정함

□ 행정업무 권한의 위임 추가(제18조제2항 개정)

- 무병화인증제 도입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등 권한을 종자원장에게 위임*

* 위임 업무 : 무병화인증 기관의 지정·취소, 지정 갱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등

□ 종자업·육묘업 등록 기준 개선(제15조 별표5, 제15조의2 별표5의 2 개정)

- 버섯 종자업 등록의 경우 성형된 종균을 다시 포장하여 판매만 하는 경우에 한해 장비기준을 면제(별표5 개정)

- 채소·화훼작물 육묘업 등록의 경우 육묘 시기, 재배지의 기후적 여건 등에 따라 난방기가 필요없는 경우가 있고, 과와 양과는 대부분 노지(露地)에서 육묘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철재하우스 시설과 난방기의 구비는 면제하는 것으로 완화(별표5의2 개정)

□ 과태료 부과기준 현행화(제20조 별표6 개정)

- 종자산업법 일부개정(‘22.12.27)에 따른 관련 업무(무병화인증 자료제출 거부* 등)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기준 신설 등 별표6을 현행화

* 법 제36조의8제3항 위반 시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1~5회 / 1백~1천만원) 등

2.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 사항

□ 무병화 인증기준 및 행정처분 등(제23조의2~제23조의7 신설)

- 무병화인증 신청은 묘목을 포장에 식재 후 1개월 이내 무병화인증 지정기관에 하고 신청서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도록 함
 - * 종자업등록증사본, 종자의 생산·판매 계획서, 포장재식도, 어머니무의 종자검정증명서
- 인증표시는 묘목 1주 또는 최대 10주 단위로 부착
- 무병화인증 종자를 갱신하기 위해서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전 신청
- 무병화인증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인증종자업자의 시정조치, 인증 취소 등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마련(별표3의4)

□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및 행정처분 등(제23조의8~제23조의13 신설)

- 무병화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인력·시설 등 기준(별표 3의5)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
- 인증기관 지정을 갱신하려는 자는 5년의 유효기간 만료 3개월전 신청
- 무병화인증기관에서 거짓 등으로 지정을 받았을 경우 지정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마련(별표 3의6)

□ 과수화상병의 효율적인 방역을 위해 종자의 생산·판매이력 관리제 도입(제28조의2~제28조의4)

- 기록·보관 대상 종자는 과수화상병이 발생하는 사과와 배로 정함
- 종자의 생산이력 파악을 위해 생산장소 및 면적, 생산수량 등 기록·보관
- 종자의 판매이력 파악을 위해 판매자의 성명·연락처 등 기록·보관
- 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은 국립종자원에서 하는 것으로 정함

□ 판매 외 목적으로 수입하는 종자에 대한 신고 규정 마련(제28조의5)

- 대상 작물은 과수 및 농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물로 규정
- 과수 종자를 자가소비·시험연구용 등 판매 외 목적으로 수입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국립종자원에 하도록 함

* 수입신고서 및 첨부서류 : 신고품종의 사진, 식물방역법에 따른 합격증명서 등